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① 계약성립은 공단이 제공한 표준계약서와 욕구조사 및 사회복지사의 총평에 의거 작성된 서비스 계획을 근거로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간 서명이 된 시점에 성립한다.

② 다음 사유 발생 익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공단에서 등급 외로 통보되어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해지를 통보한 경우
3. 서비스 제공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계약목적)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수급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 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① 방문요양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기타 비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일반 장애자가 비 급여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와 협의를 통하여 시급 12,000~13,000원 한도 내에서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분이상 ~ 60분미만	37,00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6,250
기타 비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일반 장애자가 비 급여로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간당 이용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③ 방문간호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1	30분 미만	39,440
다-2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
다-3	60분 이상	59,500
기타 비급여	장기요양 등급이 없거나 일반 장애자가 비 급여로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 시간당 이용금액은 장기요양급여비에 준하여 부담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시 등급별로 일반대상자는 이용금액의 15%, 경감대상자는 9%, 6% 의료급여대상자는 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④ 복지용구

복지용구 이용료는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비급여 대상자의 경우 모두 공단 고시 급여액에 준하며 비급여자는 100% 본인부담, 장기요양대상자는 고시금액의 15%(일반인), 9%, 6%(경감대상자)를 본인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①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시설로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안전이나 식사 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경우